

韓國圖書館史研究抄 (九)

朴 熙 永



目 次

- 3) 實錄
- 4) 史庫
- 第四節 佛典
- 第五節 圖書撰修 및 刊行
- 第六節 外國과의 關係
- 1) 明
- 2) 日本
- 3) 琉球
- 第七節 圖書에 關한 諭示 및 上疏

3) 實錄

第二期는 文宗으로 부터 成宗까지를 謂하엿으므로 第二期中에서 이루어진 實錄은 文宗의 前代인 世宗으로 부터 文宗, 端宗, 世祖, 睿宗의 五代朝 實錄이 이루어진 것이다.

世宗實錄은 文宗2年(1452)2月22日부터 撰修를 始作하였는데 처음에는 ① 皇甫仁, 金宗瑞, 鄭麟趾가 監修하다가 後에는 鄭麟趾가 혼자서 監修하여 端宗2年(1454)3月30日 163卷을 春秋館이 進하였다.

文宗實錄은 世宗32年(1450)부터 文宗2年(1452)까지의 史草를 收納케 하여 端宗元年(1453)1月6日부터 撰修를 始作하였는데 鄭麟趾가 이를 監修하여 世祖元年(1455)11月10日 13卷을 春秋館이 進하였다.

端宗實錄은 世祖10年(1464)11月부터 大提學 宋相琦가 撰修를 始作하였는데 魯山

君日記라고 이름 지어 14卷 附錄1卷으로 이루어 졌다.

世祖實錄은 睿宗元年(1469)4月부터 當時 春秋館領事 申叔舟, 韓明洽, 崔恒, 春秋館知事 姜希孟, 梁誠之 등이 撰修하여 成宗2年(1471)12月15日 49卷을 春秋館이 進하였다.

睿宗實錄은 成宗2年(1471)12月부터 春秋館領事 申叔舟 등이 撰修하여 成宗3年(1472)5月9日 8卷을 春秋館이 進하였다.

- ① 文宗實錄 卷12 文宗2年2月丙戌條
- ② 端宗實錄 卷10 端宗2年3月辛巳條
- ③ 端宗實錄 卷5 端宗元年正月甲子條
- ④ 世祖實錄 卷2 世祖元年正月辛巳條
- ⑤ 國史編纂委員會刊 朝鮮王朝實錄中 端宗實錄의 凡例
- ⑥ 國史編纂委員會刊 朝鮮王朝實錄中 世祖實錄의 凡例
- ⑦ 成宗實錄 卷13 成宗2年12月壬午條
- ⑧ 國史編纂委員會刊 朝鮮王朝實錄中 睿宗實錄의 凡例
- ⑨ 成宗實錄 卷18 成宗3年5月乙巳條

4) 史庫

第二期의 次代인 文宗의 前代가 되는 世宗朝에도 外史庫로서 全州, 忠州, 星州의 三史庫가 있었는데 이中 全州의 史庫는 새로 建築하였다.

成宗4年(1473)8月26日에 全州新構史庫에다 前後實錄을 移安하였다는바 이로써

成宗4年3月頃에 全州史庫가 新講落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뒷바침하는 記錄으로 成宗實錄 卷21 成宗3年8月庚辰(16日)에 實錄 奉安使들이 睿宗實錄을 全州史庫에 奉安하기 前에 啓하기를 全州史庫가 造成된後 渡遣할 것을 請하고 있는바 이것은 全州史庫가 完成하기 一年前의 記錄이다.

成宗5年(1474)8月13日 外史庫의 曝曬가 있었는데 修撰 李命崇을 星州에, 校理 崔漢禎을 忠州에, 應教 李孟賢을 全州로 各遣하도록 되었는데 全州에는 李孟賢을 代身하여 柳洵을 遣하여 各各 曝曬하였다.

① 成宗實錄 卷33 成宗4年8月乙酉條

② 成宗實錄 卷46 成宗5年8月乙未條

第四節 佛 典

世祖는 佛敎를 崇尚하였으며 佛敎의 發展뿐만 아니라, 歷史上 特記할 여러 事業을 하였다. 世祖4年(1458)閏2月에는 海印寺에서 大藏經을 50件 印刷하기 始作하여 同年4월에 印刷을 畢하였다. 이 大藏經 印刷에 있어 海印寺印經敬差官으로 尹贊, 鄭根이 이 事業을 바르게 하기 爲하여 任命되었고 僧 信眉, 竹軒等이 이를 監하였다. 그리하여 印刷된 大藏經은 各道 名山 巨刹에 分藏케 하였다. 한편 當時 海印寺에 있는 藏經堂이 좁고 더러워서 慶尙道 監司에 命하여 藏經堂을 40餘間 增構케 하였다.

世祖4年(1458)에 大藏經 50件을 印刷한 原因은 日本이 大藏經을 求하여 왔었고 또한 너무 많이 賜하여서 남은 大藏經이 얼마되지 않아서 王이 世祖3年(1457)6月 26日 桂陽君 璫等에 傳하하기를 來年봄 即 世祖4年 봄 50件을 海印寺에서 摹印하여

6月前에는 畢功해서 名山福地에 分置하여 先王 先后及 祖考의 冥福에 資하게 하였다. 그래서 忠淸, 全羅, 慶尙, 江原, 黃海道의 觀察使로 하여금 所用의 종이 墨 黃蠟을 海印寺에 보미게 하여 이 일이 成事케 하였다. 그리고 보면 命令보다도 2個月이 빨리 畢하게 되었던 것이다.

成宗9年(1478)11月21日에는 慶尙道 觀察使 朴健에 諭하여 海印寺 所藏의 大藏經及 板子의 數目을 考審하여 啓送케 하였다.

第二期中에 있어서 外國 主로 日本이지만 日本, 對馬島, 琉球, 그리고 久邇國等의 나라로 부터 大藏經을 求하였던 事實을 年代順으로 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文宗2年(1452)10月15日 日本 脫帖된 130 卷을 強請

賜하다

世祖元年(1455)8月25日 琉球 請

賜하다

世祖2年(1456)3月15日 日本 請

釋典一帙을 賜하다

世祖3年(1457)5月26日 日本 請

一部를 賜하다

世祖5年(1459)6月2日 日本 請

成道記等佛經을 賜하다

世祖5年(1459)8月23日 日本 請

賜하다

世祖6年(1460)5月15日 日本 請

世祖6年(1460)9月27日 日本 請

賜하다

世祖7年(1461)12月2日 琉球 請

賜하다

世祖8年(1462)10月9日 日本 請

賜하다

成宗2年(1471)11月2日 琉球 請

一部를 賜하다

成宗9年(1478)11月3日 久邊國 請
 成宗10年(1479)4月17日 日本 請
 一部를 賜하다
 成宗10年(1479)6月22日 琉球
 成宗13年(1482)4月9日 日本 請
 賜하다
 成宗13年(1482)閏8月14日 久邊國 請
 成宗17年(1486)4月7日 對馬島 前年 賜
 한것中 風雨에 損
 한 14册의 改給을
 請

成宗18年(1487)4月26日 日本 請
 賜하다
 成宗20年(1489)8月10日 日本 請
 賜하다
 成宗21年(1490)9月18日 日本 請
 賜하다
 成宗22年(1491)8月4日 日本 請
 成宗22年(1491)12月2日 琉球 請
 賜하다

參考: 東閣雜記 上海印寺重修記
 朝鮮王朝實錄 文宗 世祖 成宗實錄
 日本으로 부터는 大藏經을 請하기 爲하
 여 大內殿 多多良가 使者를 여러번 보내
 왔는데 大內殿 多多良가 보낸 使者에게는
 大槪 賜하였다 多多良에 對하여는 端宗
 1年(1453)6月24日 日本 大內殿의 使者가
 와서 多多良氏의 祖上인 百濟의 琳聖太子
 의 譜系를 請하므로 春秋館 集賢殿으로
 하여금 古籍을 考하여 이를 알려 주도록
 하였다. 이보다 50餘年前인 定宗1年(1399)
 8月에는 百濟 始祖 溫祚王 高氏의 後孫이
 日本으로 避難하여서 代代로 六州牧을 繼
 承하여 云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日本
 의 大內殿 多多良는 百濟의 王家 高氏의
 後孫임을 알수 있다.

① 端宗實錄 卷6 端宗元年6月己酉條

第五節 圖書撰修 및 刊行

第二期에 있어서 世祖와 成宗은 그間
 어느時代 보다도 가장 歷史上에 特記할
 수 있는 撰修事業을 하였던 것으로 따라
 서 훌륭한 書籍이 刊行되었던 것이다. 이
 는 곳 第一期에서 印刷術, 製紙術, 撰修
 機關의 整備, 人材의 養成等 圖書의 撰修
 와 圖書刊行에 對한 準備가 完成하게 되
 어 第二期에서는 그 成果를 거둔 것이라
 고 말 할수 있다. 이時期에 撰進 刊行된
 圖書를 주러 보면 다음과 같다.

文宗元年(1451) 鄭陟 兩界地圖를 撰進
 " 王의 親撰 新陣法 이
 록
 " 春秋館 新撰 高麗史를
 撰進
 " 高麗史를 編年紀事로
 纂修를 命
 " 金淡이 新撰兵要에 注
 를 命
 文宗 2年(1452) 春秋館 高麗史節要를
 撰進
 " 首陽大君 所撰의 歷代
 兵要를 進
 " 首陽大君이 兵要의 領
 賜, 孫子(兵書)의
 印刷, 孝子圖의 領
 을 命
 端宗元年(1553) 錦山郡에 左傳의 刊板
 을 命
 " 樂譜 印行을 命
 " 梁誠之에 朝鮮都圖, 八
 道各國州府郡縣各圖
 의 制作을 命
 端宗 2年(1454) 梁誠之 皇極治平圖를
 撰進

- " 權近의 禮記淺見錄, 入學圖, 金津의 補說의 刊行을 請
- " 高麗史의 印刷 廣布를 命
- 端宗 3年(1455) 宋處寬等 吏文曆錄 4卷, 詔勅卷日本圖書契1卷, 日本國大內殿書契1卷 中朝榜文1卷, 京外史庫所藏 吏文曆錄2件을 進
- " 洪武正韻譯訓 이록
- 世祖 1年(1455) 黃守身 慶尙道, 熊川 地圖書를 進
- " 梁誠之에 地理志의 撰地圖의 書를 命
- " 梁誠之 閔延, 茂昌, 虞芮 三邑의 地圖를 獻
- 世祖 2年(1456) 新纂兵要를 江原, 全羅, 慶尙 三道에 分送 刊板를 命
- 世祖 3年(1457) 姜希孟等 國朝寶鑑을 撰
- " 梁誠之 龍飛御天歌를 進
- 世祖 4年(1458) 申叔舟의 修撰 國朝寶鑑 이록
- " 朴通事, 老乞大를 黃海, 江原兩道에 分送 刊板을 命, 校書館에 送하여 印行 廣布를 命
- " 全羅道錦山郡 開刊의 趙學士 陰字千字板의 上送을 命
- " 新印 易學啓蒙要解를 文臣 儒生에 頒
- 世祖 4年(1458) 東國通鑑을 撰
- " 全鈞 初字字會畧 諺文으로 註
- " 編年體 高麗史를 改修한 高麗史全文 이록
- 世祖 5年(1459) 叢書註解의 撰을 命
- " 李克堪等에 前代女訓의 撰進을 命
- " 李克堪에 治平要覽의 讎校, 醫方類聚, 方書의 校正을 命
- " 梁誠之 考校新撰의 叢書를 進
- " 梁誠之에 醫方類聚의 校正을 命
- 世祖 6年(1460) 宋處寬, 梁誠之等에 孫子, 注解의 校正을 命
- " 洪應에 明皇戒鑑의 添注를 命
- " 新定經國大典戶典을 頒行
- " 申叔舟에 淨碧樓記의 進을 命
- 世祖 7年(1461) 兵書 200件을 印賜
- " 崔恒等에 叢書의 諺譯을 命
- " 申叔舟에 北征錄 이록
- " 李文炯等에 歷代兵要의 讎校를 命
- " 經國大典刑典을 頒
- " 李承召, 梁誠之等에 明皇戒鑑의 諺譯을 命
- 世祖 8年(1462) 申叔舟等 兵將說의 註를 撰進

	宋處寬, 洪應에 兵書의 讎校를 命		輯을 命
	崔恒에 觀音現相記의 撰을 命		東國道鑑 修撰
世祖 9年(1463)	永膺大君等에 明皇誠鑑의 歌詞의 諺譯을 命		八道에 救急方을 頒
	申叔舟 梁誠之에 本國地圖의 修撰을 命		梁誠之에 大明講解律, 律學, 解頤, 律解辨疑의 校正을 命. 慶尙, 全羅, 忠清에 分送 各500件을 刊印 廣布를 命
	崔善復, 金壽寧에 吳越春秋의 讎校를 命		
	崔恒等에 東國通鑑의 撰을 命	世祖13年(1467)	梁誠之 海東姓氏錄을 撰進
	申叔舟, 崔恒이 註解 御製識將說三篇을 進		新制大典草 이록
	永順君溥, 崔灝元이 八卦圖說을 作		安孝禮 俞希益等에 都城을 尺量地圖書로 作成을 命
	梁誠之, 鄭陟 東國地圖를 撰進	世祖14年(1468)	樂書를 慶尙, 忠清, 江原에 分送 開刊을 命
	禪宗 永嘉集 2卷 이록		文士들에게 世紀大全의 撰을 命. 諸臣에 頒賜.
	王 醫纂論을 製. 任之 潛에 註解印頒을 命	睿宗元年(1469)	天下圖 이록
世祖10年(1464)	崔恒等에 兵將說註의 刪定을 命		武定寶鑑 이록
	申叔舟等에 靖難日記의 修를 命		崔恒等 經國大全을 撰進
世祖11年(1465)	孝寧大君 圓覺經을 讎校	成宗元年(1470)	崔恒等 經國大全 校正 이록 이를 進
	孝寧大君 圓覺經을 讎校	成宗 5年(1474)	經國大全을 改撰, 中外에 頒
	梁誠之에 命한 五倫錄 撰進	成宗 6年(1475)	四書五經 40帙을 成均館에 賜
	金宗直 慶尙道地圖誌를 撰		平安道에 四書五經을 印送
世祖12年(1466)	親定 周易口訣을 成均館에서 頒	成宗 8年(1477)	盧思愼等 三國史節要를 撰進
	徐居正에 馬醫書의 編		

"	韓繼禧, 任元濬, 權撰 醫學類聚 30帙을 印 進	成宗19年(1488)	金礪石 新刊性理群書 10件을 進
"	尹子雲 蒙漢韻要 1卷을 進 印頒	"	鄉藥集成方所載 常用 藥을 諺文으로 翻譯 民間에 告 印布를 命
成宗 9年(1478)	鄉藥集成方을 印頒	成宗19年(1488)	成健, 東垣拾書를 進
成宗11年(1480)	申叔舟撰 訓世評話의 刊行을 命	成宗20年(1489)	許鏗, 鄭錫堅에 命 三 綱行實을 刪定 印出
成宗12年(1481)	徐居正等 東國輿地勝 覽을 撰	"	內醫院 新撰救急簡易 方을 進
成宗13年(1482)	任元濬等 에 蘇文忠公 集難解處의 註解를 命	"	諸道에 將鑑博議를 頒
"	盧思愷等에 綱目新增 의 撰을 命	成宗21年(1490)	三綱行實을 京城五部 八道郡縣에 頒
成宗14年(1483)	徐居正等에 諺文으로 聯珠詩格黃山谷詩集 의 翻譯을 命	成宗23年(1492)	鄭道傳의 撰書를 印出
"	徐居正의 詩藁 이록	"	李克增等 大典續錄을 畢撰
"	徐居正에 匪躬堂記의 作을 命	成宗24年(1493)	文天祥集을 印頒
成宗14年(1483)	洪武達에 五禮儀註의 改正을 命	"	許弼 醫方要錄 3卷을 撰進
成宗15年(1484)	李封 本國輿地圖를 獻	"	樂學軌範 이록
"	陣書1000本을 印 武臣 에 頒賜	"	事文類聚 90件을 文臣 에 頒賜
"	徐居正等 東國通鑑을 撰進	成宗25年(1494)	加減十三方 30餘本을 醫員에 頒賜
成宗16年(1485)	徐居正等 新編東國通 鑑을 進	"	李昌臣, 李瑠, 權五福 翻譯의 安駮集 水牛 經을 印頒
"	金宗直等에 東國輿地 勝覽의 讎校를 命		
成宗17年(1486)	新印 文翰類選을 文臣 에 頒賜		
成宗18年(1487)	新撰 東國輿地勝覽의 印行을 命		
"	孫舜孝 食療撰要를 進		

第六節 外國과의 關係

1) 明

第一期에 이어 第二期에 있어서도 明으로 使臣을 보냈으며 明으로부터 도라오는 使臣은 大概 圖書를 갖어 왔고 明이 보내온 使臣도 圖書를 갖어와서 獻上하였다. 使臣을 통하여 明으로부터 求해오도

圖書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文宗元年(1451)7月24日

明으로 가는 使臣에게 사오도록 한 圖書는 東巖周禮, 儀禮經傳通解續, 儀禮集傳集註, 通志, 中庸輯略, 資治通鑑總類, 通鑑本末, 宋史, 朱文公集, 宋朝名臣五百家播方大全文粹, 續文章正宗, 備舉文言, 宋朝名位奏議等の 圖書이다.

端宗2年(1454)9月27日

賀聖節使 黃致身이 明이 賜한 宋史를 가져오다.

端宗3年(1455)4月5日

醫書인 聖惠方, 永類鈴方, 得効方, 私濟方衍義, 本草補註, 銅人經, 纂圖脈經等以外에도 여러 書가 없으므로 明으로 가는 使臣에게 사오도록 하였다.

世祖11年(1465)6月23日

地理大全이 本國에 없으므로 地理諸書를 明으로 부터 사오도록 하였다.

睿宗元年(1469)閏2月4日

明使 崔安等이 왔는데 明王이 보낸 五倫書, 五經大全, 性理大全等を 바치다.

成宗元年(1470)10月2日

明으로 가는 賀正使에게 明의新 撰書와 弘文館, 藝文館이 아직 具備하지 못한 書籍을 사오도록 하였다.

成宗元年(1470)10月4日

明으로 부터 도라온 謝恩使 金國光이 四書五經을 바치다.

成宗11年(1481)4月12日

明으로 부터 도라온 奏聞使 魚世謙이 文翰類選, 五倫書, 律條疏議, 國子通志, 趙孟頫의 書族四軸을 바치다.

成宗12年(1481)12月28日

明으로 부터 도라온 賀聖節使 韓致亨이 明의 王이 보낸 資治通鑑, 程氏遺書, 眞西山集, 事文類聚, 致堂管見, 宋朝文鑑各

一部를 바치다.

成宗13年(1482)3月8日

明으로 부터 도라온 賀正使 李克基가 清華集, 劉向新語, 劉向說苑, 朱子語類, 分類杜詩와 羊角書板을 바치다.

成宗14年(1483)7月6日

明使가 圖書를 바쳤다는데 書名은 알수 없다.

成宗21年(1490)3月4日

明으로 부터 도라온 賀正使 尹孝孫이 明에서 購得한 活民大略, 續資治通鑑綱目, 趙孟頫의 書族二幅을 바치다.

成宗23年(1492)6月23日

遠接使 盧公弼이 復命하면서 董越의 朝鮮賦를 바치다.

成宗25年(1494)正月7日

明으로 부터 도라온 千秋使 安縉이 明에서 購得한 丘潛이 撰한 大學衍義補를 바치다.

參考: 文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實錄.

2) 日本

日本과는 우리나라가 日本에 求한바는 없고 日本이 우리나라로 부터 많은 大藏經을 求하여 갔고 大藏經을 주지 못할때는 다른 佛典을 주었고 一般圖書도 아래와 같이 賜하고 있다. 이것이 全部는 아니다.

成宗4年(1473)7月26日

日本 因伯丹三州太守의 使者가 四書一件을 바치다.

成宗16年(1485)10月10日

日本 大內殿의 使者에게 四書六經, 韻府群玉, 韻會, 翰墨大全, 事林廣記, 莊子, 老子를 賜하다.

成宗20年(1489)8月26日 日本 使臣에게

북한 圖書의 使臣自身이, 또는 明이 보낸 得効方, 東坡, 杜詩, 黃山谷, 詩學大成 등의 圖書를 賜하다.

3) 琉球

琉球에도 여러차례 大藏經을 賜하였으며 世祖8年(1462)正月16日에는 大藏經을 賜하면서 尋訪하고 있는 書目을 주어서 琉球에 있는 데로 보낼 것을 請하였다. 한편 世祖13年(1467)7月13日 琉球王의 使僧이 史纂錄, 林間語錄, 羅先生文集 등을 바친 일이 있었다.

第七節 圖書에 관한 諭示 및 上疏

世祖와 成宗은 圖書文化 發展을 爲하여 盡力하였으며 圖書의 蒐集을 爲하여도 數次 諭示를 하고 있다.

世祖3年(1457)5月26日에 八道監司에 諭示하여 古朝鮮秘祠大辯說, 朝代記, 周南逸士記誌, 公記表訓, 三聖密記, 安舍老, 元董仲三聖記, 道證記, 智異聖母河沙良訓, 文泰山, 王居仁, 薛業等三人記錄, 修撰金所一百餘卷, 動天錄, 磨虱錄, 遼天錄, 壺中錄, 地華錄, 道誥漢都識記 등의 圖書를 採進케 하였다.

世祖9年(1463)3月25日 內藏의 醫書를 哀集校定하기 爲하여 唐本의 方書(醫書)는 秩이 欠하여 있더라도 모두 進上케 하고, 書籍이 많은 世家는 校定한 後에 이를 選給하고 論賞은 願하는 데로 하도록 命하였다.

睿宗元年(1469)9月18日에는 周南逸士記志, 公記表訓天祠, 三聖密記, 道證記, 智異聖母河沙良訓, 文泰玉居仁, 薛業三人記百餘卷, 壺中錄, 地華錄, 明鏡敷와 天文地理陰陽에 關하여 諸家의 藏書를 訪求하여

京中은 10月末日, 外方近道는 11月末日, 遠道는 12月末日까지 呈納토록 하고 萬一 匿者는 處斬케 하는 諭示를 하였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著名의 圖書는 大概가 世祖3年(1457)5月26日의 諭示에 있던 圖書인 것으로 보아 蒐集이 全然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強硬策을 세운 것 같이 보인다.

成宗9年(1478)正月25日에는 冊값이 몹시 비싼 것을 成宗이 念慮하여 戶曹에게 魚箭稅布는 每年 典校署에 優給하여 紙地를 販買하여 印刷를 많이 해서 冊값을 減케 하여 買讀하기 容易토록 할 것을 命하였다.

成宗21年(1490)2月15日 各道監司에 下旨하여 東萊歷代史評節, 陸賈新語, 楚漢春秋, 唐臣奏議, 魏略, 陳後山集, 韋蘇州集, 司馬溫公集, 司馬先生家範, 太平御覽, 山海經, 唐鑑, 管子, 文苑英華, 文章正宗 등의 圖書를 널리 求하여 上送토록 命하였다.

이런게 全國적으로 蒐集하여 入手한 圖書는 곧 印刷하여 頒賜하기도 하였다.

- ① 世祖實錄 卷7 世祖3年5月戊子條
- ② 世祖實錄 卷30 世祖9年3月甲寅條
- ③ 睿宗實錄 卷7 睿宗元年9月戊戌條
- ④ 成宗實錄 卷88 成宗9年正月戊子條
- ⑤ 成宗實錄 卷237 成宗21年2月庚子條

第二期中에서 圖書와 史庫에 關한 上疏는 주로 梁誠之가 하고 있는데 梁誠之는 南原사람으로 太宗14年(1414)에 나서 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을 거쳐 成宗13年(1482)에 別世하였으며 字는 純夫라 하고 號는 訥齋라 하고 文襄이라 고 諡한다.

梁誠之가 判書雲觀事로 있을 때인 世祖3年(1457)3月15日 圖書를 三史庫에 藏할 것을 請하였고 世祖8年(1462)1月28日 行

護軍이던 梁誠之를 提調로 하여 藝文館에서 書籍을 磨勘케 하였다고 있는바 增補文獻備考 卷242 藝文考一에 보면

「世祖八年初 集賢殿之罷也 其所藏書籍 移 實於藝文館 至是上慮世宗朝辛勤哀聚之書籍 散亂軼 命梁誠之彙分類別整束藏弄」

라고 있어 世祖8年(1462) 集賢殿을 廢止하고 集賢殿의 藏書를 藝文館으로 移管할때 梁誠之가 分類整理하였음을 알수 있다.

世祖9年(1463)5月30日 梁誠之가 行僉知中樞院事로 있을때 ③前年에 受命한 藝文館藏書의 分類整理를 마치고 請한 것이다. 要約하면 內藏의 圖書를 高麗肅宗의 故事에 따라 모든 冊에나 後面에 朝鮮國第六代 癸未藏御藏書, 本朝九年 大明天順七年이라 眞字로 씌우고 前面에 朝鮮國御藏書라 篆字로 씌우며 萬世에 昭示하거나 또는 新羅나 前朝盛時の 例에 따라 別途로 年號를 세워 標識하고 또 宋朝聖製의 例에 따라 이제 進한 御製詩文을 麟趾堂東別室에 奉安하여 奎章閣이라 이름짓고 諸書所藏의 內閣을 秘書閣이라 이름 짓고 大提學, 提學, 直閣, 應教等의 官을 두고 郎廳은 藝文祿官을 兼差하여 出納을 掌하도록 請하고 있다.

世祖10年(1464)5月28日 梁誠之가 同知中樞院事로 있을때 建議하였다가 實行을 보지 못했지만 三司를 두고 左司는 京中富商, 右司는 開城富商을 錄籍하여 貢物을 代納케 하고 全羅, 忠淸을 右司 慶尙, 黃海道는 左司에 屬하게 하여 右司所收의 七分은 刊經의 費로 三分은 書籍印出의 費로 하자는 建議였다.

世祖12年(1466)11月17日 梁誠之가 大司

憲으로 있을때 書籍에 關한 十條를 上疏하였다. 이를 要約하면

1. 世宗, 文宗兩朝의 實錄이 一件뿐이므로 典校署에 命하여 新寫小字로서 三件을 印出하여 外三庫에 藏할것.

2. 小字印出의 兩朝 實錄 三件은 鐵錫의 飾 綾段의 衣를 除하고 太祖, 太宗, 恭靖大王實錄도 또한 小字로서 各一件을 印出하여 藏할것.

3. 壬申(文宗2年)부터 丙戌(世祖11年)에 이르는 時政記를 만들것.

4. 外三史庫의 藏書를 火災와 外寇를 念慮하여 全州史庫를 南原의 智異山, 星州史庫를 善山의 金鰲山, 忠州史庫를 淸風의 月岳山에 옮겨서 名山에 藏하는 義를 남길것.

5. 東國所撰의 書籍을 磨勘하여 十件을 만들어서, 弘文館春秋館과 外三史庫에 各各 二件을 藏할것.

6. 弘文, 春秋館所藏의 元史 宋史等一件뿐인 書冊은 三件을 만들도록 할것.

7. 外方書冊板本은 所掌없으므로 政院으로 하여금 八道에 下書하여 書板의 張數, 刊朽를 開寫하여 各一件을 印出上送케 할것.

8. 省略

9. 文籍을 選紙의 價가 있다하여 承政院日記, 寺社經文을 훑치는 者가 있으므로 嚴禁케 하고 이런者를 嚴罰할것.

10. 典校署印出의 書冊中에서 오래 傳할것 十件은 弘文館 二件 春秋館, 外三庫, 典校署, 文武披, 藝文館, 成均館에 各各一件을 藏할것.

① 世祖實錄 卷7 世祖3年3月戊寅條

② 世祖實錄 卷27 世祖8年1月癸亥條

③ 世祖實錄 卷30 世祖9年5月戊午條

④ 世祖實錄 卷33 世祖10年5月壬午條

⑤ 世祖實錄 卷40 世祖12年11月乙酉條